

	규정 직장예비군대대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C103
		제정일자	2015. 3. 16
		개정일자	
		개정번호	0
		페이지	1/4

제1조(목적)

제2조(기구와 업무분장)

제3조(직장예비군대대장)

제4조(편성)

제5조(기능)

제6조(예비군 자원관리)

제7조(교육훈련)

제8조(병영상담콜센터 운영)

제9조(학생안전훈련)

제10조(방위협의회 운영)

제11조(보칙)

부 칙

작성부서	직장예비군대대	제정일자	2015. 03. 16.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사무처장	교무처장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

규정

직장예비군대대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C103		
제정일자	2015. 3. 16		
개정일자			
제정번호	0	페이지	2/4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3
		제정일자	2015. 3. 16
직장예비군대대 운영 규정	개정일자		
	개정번호	0	페이지 3/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(이하 “예비군대대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구와 업무분장) ① 예비군대대는 총장 직속 기구로 구성한다.

- ② 예비군대대는 학생예비군 관리, 병영상담콜센터(이하 “콜센터”라 한다) 운영, 민방위업무, 학생안전훈련, 기타 충무계획 시행 준비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예비군대대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안전훈련, 직장민방위대 조직 관리, 전시대비 충무계획 시행 준비,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, 보안업무를 시행한다.

제3조(직장예비군대대장) ① 예비군대대장은(이하 “대대장”) 총장이 임명하고, 구성원은 참모 1명, 사무원 1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4조(편성) ① 예비군대대는 대대본부, 교직원분대, 학생중대로 편성하며, 학생중대는 전공 계열별 유사한 학과 단위로 소대 및 분대를 편성하여 조직을 구성한다.

- ② 콜센터는 예비군대대에 둔다.

제5조(기능) ① 예비군대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예비군 편성 및 지원관리
2. 학생예비군 훈련 지휘 및 감독
3. 병영상담콜센터 운영
4.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
5. 재난 관련 학생안전훈련 계획 및 시행
6. 전시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 준비
7.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
8. 그 밖에 상기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조(예비군 자원관리) ① 학생예비군 중 편·입학, 복학 등 학적변동시 예비군대대에 편성되고, 휴학·자퇴·수업연한 초과로 졸업탈락자는 예비군대대 편성에서 제외된다.

② 예비군대대에서는 일일단위 교무처에서 학적변동사항을 접수받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한 전입 및 전출 조치로 자원을 관리한다.

③ 교직원 중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대 교직원분대 편성하여 자원을 관리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3
		제정일자	2015. 3. 16
직장예비군대대 운영 규정	개정일자		
	개정번호	0	페이지 4/4

제7조(교육훈련) ① 예비군대대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개인당 년 1회 8시간 기본훈련을 실시하고, 기타 전년도에서 이월된 훈련은 개인별 보충훈련을 실시하여야 된다.
 ② 교직원 분대 편성된 인원은 신분별, 연차별, 유형별 훈련을 실시한다.

제8조(병영상담콜센터 운영) ① 콜센터는 교무처와 협업을 토대로 예비군대대장이 운영한다.
 ② 콜센터는 업무 및 기능을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학생안전훈련) ① 예비군대대에서는 년 1회 이상 안전 관련 훈련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진,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.
 ② 민방위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
제10조(방위협의회운영) ① 예비군대대에서는 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방위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이라 한다) 회의를 정기회의 반기 1회 실시한다.
 ② 협의회 회의는 예비군대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예비군훈련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고 시행한다.
 ③ 협의회 구성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사무처장되고,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이 수행한다.
 ④ 협의회 회의에서 연도계획과 예비군육성지원 중기 계획 확정한다.
 ⑤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회의결과는 위원회심의후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